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 0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9가합103580 집행판결
원 고	A
피 고	B
피고보조참가인	C
변 론 종 결	2011. 5. 20.
판 결 선 고	2011. 6. 17.

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가. 2007. 8. 1.자 용선계약 및 2007. 8. 8.자 용선계약에 관한 각 중재사건에서 중재인 패트릭 오 도노반(Patrick O'Donovan) 및 크리스토퍼 제이. 더블유. 모스(Christopher J.W. Moss)가 내린 별지1 목록 기재 각 중재판정 및,

나. 영국 고등법원 상사법원 2009 Folio Case No.1048 사건에 관하여 판사 스틸(Steel)이 2010. 7. 14.에 한 별지2 목록 기재 판결

에 따른 각 강제집행을 허가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의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해상운송업을 영위하는 바하마 법인으로서 '노스 프린스(M. V. North Prince) 호' 및 '나비오스 머케이토(M. V. Navios Mercator) 호'를 소유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해상운송업을 영위하는 싱가포르 법인이다.

나. 용선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7. 8. 1. 피고와 '나비오스 머케이토 호'에 대하여 용선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용선기간 : 최단 2009. 1. 1., 최장 2009. 2. 12.
- 용선료 : 1일 용선료는 미합중국 통화 43,500달러(이하 '달러'는 미합중국 통화를 의미한다)
- 기타 사항은 몇 가지 조항을 제외하고는 첨부된 용선계약과 같다.
- 첨부된 용선계약

 제17조 선박소유자와 정기용선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분쟁 문제는 런던에서 3명의 중재인에게 회부하기로 한다. 계약당사자는 각각 1명의 중재인을 지명하고, 양 중재인은 제3의 중재인을 선임한다. 중재인 전원의 판정 또는 중재인 2명에 의한 판정을 최종의 판정으로 한다. 그리고 중재판정의 구속력을 위하여 중재인의 합의는 법원의 명령으로 할 수 있다. 중재인들은 해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 용선계약은 영국법

에 따른다.

2) 원고는 2007. 8. 8. 피고와 '노스 프린스 호'에 대하여 용선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용선기간 : 최단 2009. 6. 27., 최장 2009. 8. 27.까지
· 용선료 : 1일 용선료는 15일 선급으로 처음 9개월 동안에는 55,000달러, 그 다음 9개월 동안에는 45,000달러, 이후 잔여기간 동안에는 50,000달러
· 기타 사항은 첨부와 같이 합당한 수정사항과 아래 변경 내용이 반영된 선주 측의 back-to-back 용선계약에 따른다.
· 첨부된 용선계약

제17조 선박소유자와 정기용선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분쟁 문제는 런던에서 3명의 중재인에게 회부하기로 한다. 계약당사자는 각각 1명의 중재인을 지명하고, 양 중재인은 제3의 중재인을 선임한다. 중재인 전원의 판정 또는 중재인 2명에 의한 판정을 최종의 판정으로 한다. 그리고 중재판정의 구속력을 위하여 중재인의 합의는 법원의 명령으로 할 수 있다. 중재인들은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중재조항 95.에 의한다.

추가조항 제95조 중재는 중재절차가 개시되었을 당시의 런던해사중재인협회{London Maritime Arbitrators' Association(LMAA)}의 중재규칙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

다. 피고의 용선료 미지급 및 원고의 용선계약 해지

1) 원고는 2007. 11. 16. 피고에게 '노스 프린스 호'를 인도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08. 11. 13.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24회 용선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의 용선료 미지급을 이유로 '노스 프린스 호'에 대한 위 용선계약을 해지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노스 프린스 호'를 2009. 1. 5. 반환받았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08. 1. 19. '나비오스 머케이토 호'를 인도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08. 11. 13.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24회 용선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2008. 11. 20. '나비오스 머케이토 호'를 조기 반환하였다.

라. 중재판정 및 영국 고등법원 상사법원의 판결

1) 원고는 '노스 프린스 호' 및 '나비오스 머케이토 호'의 각 용선계약과 관련하여 미지급 용선료와 용선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중재를 신청하였고, 위 사건들의 중재인으로 선임된 패트릭 오 도노반(Patrick O'Donovan) 및 크리스토퍼 제이. 더블유. 모스(Christopher J.W. Moss)는 ① '노스 프린스 호'의 용선계약상 피고의 채무에 대하여 2009. 6. 11.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은 중재판정(이하 '노스 프린스 호 관련 1차 중재판정'이라고 한다)을, 2009. 7. 8.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중재판정(이하 '노스 프린스 호 관련 2차 중재판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② '나비오스 머케이토 호'의 용선계약상 피고의 채무에 대하여 2009. 7. 16. "피고는 원고에게 ⅰ) 1,891,902.6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09. 1. 5.부터 완제일까지 연 3%의 3개월 단위의 복리에 의한 금원 및 ii) 유로화 9,030유로 및 이에 대하여 2009. 7. 16.부터 완제일까지 연 4%의 3개월 단위의 복리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중재판정(이하 '나비오스 머케이토 호 관련 중재판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피고는 '노스 프린스 호' 관련 2차 중재판정 및 '나비오스 머케이토 호' 관련 중재판정에 각 불복하여 영국 고등법원 상사법원(THE HIGH COURT OF JUSTICE QUEEN'S BENCH DIVISION COMMERCIAL COURT, 이하 '영국 고등법원'이라고 한다)에 상소하였고, '노스 프린스 호' 관련 1차 중재판정은 쌍방이 상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영국 고등법원은 ① 2010. 4. 20. '나비오스 머케이토 호' 관련 중재판정을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사건번호 2009 Folio Case No. 1066), ② 2010. 7. 14. '노스 프린스 호' 관련 2차 중재판정에 대한 피고의 청구

를 기각하고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상소사건에 관하여 지출된 소송비용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사건번호 2009 Folio Case No. 1048, 이하 '노스 프린스 호 관련 판결'이라고 한다). 위 판결들은 쌍방이 상소하지 않아 모두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갑 7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뉴욕협약의 적용

대한민국은 1973. 2. 8. ① 한국법상 상사관계의 분쟁에 한해서, 또한 ② 다른 가입국의 영토 안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에 한해서 적용한다는 유보선언 하에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국제연합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이하 '뉴욕협약'이라고 한다)'에 가입·비준하였고, 위 협약은 1973. 5. 9. 조약 제471호로 발효되었으며, 중재법 제39조 제1항은 '뉴욕협약의 적용을 받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은 동 협약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노스 프린스 호' 및 '나비오스 머케이토 호' 관련 각 중재판정이 내려진 영국은 뉴욕협약에 가입되어 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각 용선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은 대한민국법상 상사관계의 분쟁임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노스 프린스 호' 및 '나비오스 머케이토 호' 관련 각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하여는 뉴욕협약이 적용된다.

나. 각 중재판정의 집행청구에 관한 판단

1) 뉴욕협약 제2조에 의하면 중재합의는 서면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때 서면에 의한 합의라 함은 계약문중의 중재조항 또는 당사자 간에 서명되었거나 교환된 서신이나 전보에 포함되어 있는 중재의 합의를 포함한다. 또한 동 협약 제4조에 의하면,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① 정당하게 인증된 중재판정 원본 또는 정당하게 증명된 그 등본과 ② 중재합의의 원본 또는 정당하게 증명된 그 등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다만 위 중재판정이나 중재합의가 중재판정이 원용될 국가의 공용어로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적기관인 번역관 또는 선서한 번역관, 외교관 또는 영사관에 의하여 증명된 번역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노스 프린스 호' 및 '나비오스 머케이토 호'에 관하여 각 이메일에 의하여 중재합의를 포함하는 용선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출력된 위 각 용선계약에 관한 이메일과 이에 대하여 선서한 번역관에 의하여 증명된 번역문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메일로 체결된 중재합의 역시 서신 또는 전보에 포함된 합의와 마찬가지로 뉴욕협약에서 의미하는 중재합의에 포함되므로 원고는 뉴욕협약 제4조에 따라 중재합의의 원본 및 그에 관한 번역문을 제출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갑 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노스 프린스 호' 및 '나비오스 머케이토 호' 관련 각 중재판정 전체의 사본을 제출하였는데 위 각 사본에는 런던해사중재인협회 명예사무관 사이먼 안거스 그라함 레슬리 가울트(Simon Angus Graham Leslie Gault)가 '진정한 사본임을 보증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런던해사중재인협회의 인장이 찍혀있는 사실, 영국의 Cheeswrights 공증사무소는 위 각 중재판정의 사본에 사이먼 안거스 그라함 레슬리 가울트가 서명하였고 런던해사중재인협회가

날인하였다고 공증한 사실, 원고가 위 각 중재판정에 대하여 선서한 번역관에 의하여 증명된 번역문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각 중재판정의 사본은 정당하게 증명된 등본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뉴욕협약 제4조에 따라 정당하게 증명된 중재판정의 등본 및 그에 관한 번역문을 제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노스 프린스 호' 및 '나비오스 머케이토 호' 관련 각 중재판정은 그 집행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2) 다만, 영국 고등법원은 '나비오스 머케이토 호' 관련 중재판정의 내용을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와 같이 감축·변경한 사실, 위 영국 고등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영국중재법 제71조 제2항에 의하면 중재판정에 대한 상소법원에 의하여 중재판정이 변경되면 그 변경부분은 중재판정의 일부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Where the award is varied, the variation has effect as part of the tribunal's award), '나비오스 머케이토 호' 관련 중재판정은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내용으로 변경되었고, 그 변경된 부분이 이 사건 중재합의에 따른 중재판정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나비오스 머케이토 호' 관련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중재판정은 그 집행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다. '노스 프린스 호' 관련 판결의 집행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① '노스 프린스 호' 관련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노스 프린스 호' 관련 판결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중재합의에 따라 영국 고등법원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위 영국 고등법원은 합의관할에 의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며, ③ 피고가 '노스 프린스 호' 관련 판결사건의 소를 제기하여 위 판결을 받았고, ④ 위 판결의 내용은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⑤ 영국에서 보통법상 외국의 민사재판이 승인 및 집행되기 위해서는 외국 민사재판이 확정되어야 하고, 그 외국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이 있어야 하며, 그 판결의 내용이 사기, 공서양속 위반, 자연적 정의에 반하지 않는 등의 요건이 구비되면 영국법원은 실질적인 내용의 재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통상 약식재판을 통해서 집행을 승인해 주는데 상호보증은 그 요건으로 삼고 있지 아니하므로, 영국과 우리나라 사이의 외국판결의 효력문제는 상호보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노스 프린스 호' 관련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중재판정 및 판결은 그 집행요건을 모두 구비하고 있으므로 강제집행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신광렬

판사 김진만

판사 이미주

별지1

목 록

1. 원고와 피고 간 노스 프린스 호(North Prince)에 관한 2009. 6. 11.자 1차 중재판정

피고는 원고에게

가. 1,736,484.08달러 및

나. (1) 675,616.44달러에 대하여 2008. 11. 13.부터,

(2) 512,115.99달러에 대하여 2008. 11. 28.부터,

(3) 675,616.44달러에 대하여는 2008. 12. 13.부터,

(4) 540,616.44달러에 대하여는 2008. 12. 28.부터,

각 2009. 4. 7.까지는 연 4%의 3개월 단위의 복리에 의한 금원을,

1,736,484.08달러에 대하여 2009. 4. 8.부터 완제일까지 연 4%의 3개월 단위의 복리에 의한 금원을,

다. 유로화 11,295유로 및 이에 대하여 2009. 6. 11.부터 완제일까지 연 4%의 3개월 단위의 복리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와 피고 간 노스 프린스 호(North Prince)에 관한 2009. 7. 8.자 2차 중재판정

피고는 원고에게

가. 5,468,477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09. 1. 5.부터 완제일까지 연 3%의 3개월 단위의 복리에 의한 금원 및,

나. 유로화 11,650유로 및 이에 대하여 2009. 7. 8.부터 완제일까지 연 4%의 3개월 단위의 복리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원고와 피고 간 나비오스 머케이토 호(Navios Mercator)에 관하여 변경된 중재판정

피고는 원고에게

가. 1,255,828.81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09. 1. 5.부터 완제일까지 연 3%의 3개월 단위의 복리에 의한 금원 및,

나. 유로화 9,030.00유로 및 이에 대하여 2009. 7. 16.부터 완제일까지 연 4%의 3개월 단위의 복리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별지2

목 록

영국 고등법원 상사법원 (IN THE HIGH COURT OF JUSTICE QUEEN'S BENCH DIVISION COMMERCIAL COURT)

2009 Folio Case No. 1048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영국화 36,000파운드를 지급하라. 끝.